

## 대학평의회 운영규정

제정 2008년 1월 3일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학교법인 호서학원정관(이하 “정관”이라 한다) 제78조의3 내지 제78조의8에 따른 호서대학교 대학평의회(이하 “평의회”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평의원의 자격)** 정관 제78조의3에 따른 평의원의 각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평의원은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.(개정 2018. 12. 12)

1. 교원은 본교에서 5년 이상 전임교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
2. 직원은 본교에서 5년 이상 정규 사무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
3. 조교는 본교에서 3년이상 교육조교로 재직하고 있는자
4. 학생은 학칙에 따라 재학하고 있는 자
5. 동문은 본교 동문회칙에 따라 정회원으로 있는 자
6.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는 본교 발전을 위하여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학교육에 한 학식 또는 경륜이 있는 자

**제3조(추천 및 위촉)** ① 총장은 평의회를 구성하는 교원, 직원, 조교, 학생, 동문 구성단위에 추천 기일을 정하여 평의원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교원대표는 각 단과 대학별 교수 회의에서, 직원은 직원회의에서, 학생은 총학생회에서, 동문 대표는 동문회에서 추천하며, 조교는 별도로 정한다.(개정 2018. 12. 12)

② 제1항의 구성단위는 지정한 기일 안에 평의원을 추천하여야 한다. 다만, 추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장에게 지정기일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.(개정 2018. 12. 12)

③ 총장은 추천받은 자를 평의원으로 위촉하고, 평의원의 운영에 협조하여야 한다.

④ 평의원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3월 이내에 보궐평의원을 위촉하여야 하며, 보궐평의원의 위촉방법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다.

**제4조(평의원 선출)** ① 평의원의 선출은 각 구성단위별로 정하는 선출방법에 따라 선출한다.

② 제1항의 선출방법에는 선출권·피선출권·후보자 등록·투개표방식 및 당선자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**제5조(자격의 상실 등)** ① 평의원으로 위촉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.

1. 교원과 직원이 3월 이상 휴직하거나 중징계처분을 받은 때
2. 학생이 휴학 또는 3월 이상 다른 학교로 파견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때

② 제2조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자격을 갖추어 평의원으로 위촉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한다.

1. 사립학교 교원임용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될 때
2.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3월 이상 평의원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
3. 특정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교사(敎唆)·선동하는 등 해교행위를 할 때
4. 기타 학사일정을 방해하는 등 해교행위를 할 때

**제6조(사임)** ① 평의원이 자진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이를 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의장으로부터 사임통보를 받은 총장은 제3조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.

**제7조(회의소집 등)** ① 의장은 평의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.

② 평의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.

- 1. 총장이 회의소집을 요구한 경우
- 2. 평의원 정수의 3분의 1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한 경우
- 3. 의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

③ 회의는 재적 평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, 평의원 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평의원들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유선 및 전자우편을 통해 통지하고, 대학 홈페이지에 회의 목적과 일정을 사전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 (신설 2020. 4. 23.)

**제8조(회의결과의 통보)** 총장이 회의소집을 요구한 경우에는 의장은 회의결과를 지체 없이 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**제9조(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)** ① 평의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고, 출석 평의원 전원이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, 회의록이 2매 이상인 경우에는 출석 평의원 중 3인 이상이 간서명하여야 한다.

② 서명이 완료된 회의록은 대학 홈페이지에 5년간 공개한다.(신설 2018. 3. 2, 개정 2020. 4. 23.)

[제목개정 2018. 3. 2]

**제10조(비밀엄수의 의무)** ① 평의원 및 관계 교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이나 대학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직무상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.(개정 2015. 7. 14)

② <삭제 2015. 7. 14>

**제11조(회의수당 등의 지급)** 평의원과 간사에 대하여는 학교예산의 범위안에서 회의수당·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**제12조(규정 개정)** ① 이 규정의 개정은 재적 평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총장은 제1항에 따라 개정된 규정 중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, 평의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의결하여야 한다.

**부 칙**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 (최초의 평의원 선출에 관한 특례) 이 규정 시행 전의 평의원 선출방법에 관한 세부지침과 그 지침에 근거하여 평의원을 선출한 것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.

**부 칙**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(2018. 3. 2)**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(2018. 12. 12)**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(2020. 4. 23.)**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